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89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7.

발 의 자:황 희·김경협·김병기

김윤덕 · 김철민 · 어기구

이원욱 • 윤관석 • 정태호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(또는 시·도지사)이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고,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,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·포괄적이여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,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중 "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운수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이 필요한 경우
- 2. 과적 운행, 과로 운전,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
- 3.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
- 4.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

제54조제2항 중 "필요하다고 인정하면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
- 2. 이 법에 따른 허가·신고·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

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경영 지도) ① 국토교통부	제41조(경영 지도) ①
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화물	
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	
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	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</u>
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	<u>당하는 경우</u>
<u>관하여</u> 운수사업자를 지도할	
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1. 운수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
	계도활동이 필요한 경우
<u><신 설></u>	2. 과적 운행, 과로 운전, 과속
	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
	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
<u><신 설></u>	3.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
	<u>가 필요한 경우</u>
<u><신 설></u>	4.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
	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
	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4조(감독) ① (생 략)	제54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	②
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대하여 업무(제49조 및 제50조	<u> </u>

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략)

- 1.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

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

 발생한 경우
- 2. 이 법에 따른 허가・신고・

 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

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

 요한 경우
- 3.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필요한 경우
- ③ (현행과 같음)